

[덧붙임1]

공고 제2024 - 호

#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2024. 4. 10.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(행정사무보조직-선거비용 실사 보조)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,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4년 3월 28일

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인



## 1. 채용 개요

채용 분야	선발 예정인원	계약기간	근무지
행정사무보조직 (선거비용실사보조)	2명	계약체결일('24. 4. 22. ) ~ '24. 6. 14.	기장군 선거관리위원회

- ※ 이번 채용 중 기간제근로자는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'기간제법」)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공무원 전환 대상이 아님
- ※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, 계약기간 만료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

## 2.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

### □ 공통 자격

- 최종면접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(2005. 4. 16. 이전 출생자)
-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람
-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### < 채용결격사유 >

#### 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

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## □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

채용분야	응시자격 및 우대사항(서류전형만 해당)
행정사무보조직 -선거비용 실사보조	<p>(응시자격) 공통 자격 외 응시자격 제한 없음</p> <p>(우대사항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국가기술자격법」시행규칙 [별표2] '사무' 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</li> <li>•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 실사요원(또는 정치자금회계 안내요원) 활동 경험자</li> <li>•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근무 경험자</li> <li>• 본인 차량을 소유하여 상시 운행(활용)이 가능한 자</li> 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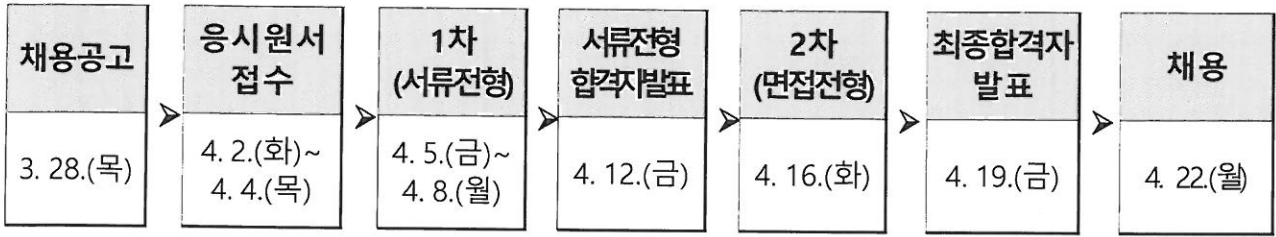
※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

※ 경력 우대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건만 인정(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.)

## □ 가점 사항(원서접수 마감일 기준)

구 분		부가 점수
사회 형평 가점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	<p>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%</p> <p>※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.</p>
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	
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	
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자	
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 대상자	

### 3. 채용 절차



#### □ 서류전형 방법

채용분야	서류전형(선발 배수)													
행정사무보조직 -선거비용 실사 보조	○ 적극적 서류전형(채용예정인원 2배수 선발)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계</th> <th colspan="3">평가점수</th> <th rowspan="2">가점</th> </tr> <tr> <th>자기소개서</th> <th>우대사항(자격증)</th> <th>기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00점 + 가점</td> <td>50</td> <td>45</td> <td>5</td> <td>3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계	평가점수			가점	자기소개서	우대사항(자격증)	기타	100점 + 가점	50	45	5	3
	계		평가점수				가점							
		자기소개서	우대사항(자격증)	기타										
100점 + 가점	50	45	5	3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심사위원의 평가점수가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 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</li> <li>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(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)</li> <li>서류전형 결과(면접전형 대상자) 발표 : 24. 4. 12.(금) 위원회 홈페이지 공고</li> </ul>														

#### □ 면접전형

채용분야	내용
행정사무보조직 -선거비용 실사 보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평정요소를 상(10점), 중(6점), 하(2점)로 계량화하여 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평정요소 : 1. 근로자로서 정신자세, 2.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3.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, 4. 예의 품행 및 성실성, 5.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</li> </ul> </li> <li>○ 불합격 기준*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불합격 기준 :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"하"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"하"로 평정했을 때</li> </ul> </li> <li>○ 동점자 발생 시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&gt;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</li> </ul>

#### □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

채용분야	최종합격자	예비합격자 (운영기한)	비고
행정사무보조직 -선거비용 실사 보조	2명	2명 이내 (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)	

- 개인별 면접 심사표 결과를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, 가점, 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(면접전형 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서류로 갈음 가능)
  - ※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
-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적격자 중에서 2명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선정
  - ※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
  - ※ 적격자가 없는 경우 예비합격자 미선정

#### 4. 전형 일정

구분	일정	비고
채 용 공 고 기 간	24. 3. 28.(목) ~ 24. 4. 4.(목)	기장군위원회 및 기장군청 홈페이지, 워크넷
원 서 접 수 기 간	24. 4. 2.(화) 09:00 ~ 24. 4. 4.(목) 18:00	직접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(가점대상,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제출 가능)
서 류 전 형	24. 4. 5.(금) ~ 24. 4. 8.(월)	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4. 4. 12.(금)	기장군위원회 홈페이지
면 접 전 형	24. 4. 16.(화)	면접시간·장소 별도 안내 (가점대상,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제출)
최 종 합 격 자 발 표	24. 4. 19.(금)	기장군위원회 홈페이지
채 용 예 정 일	24. 4. 22.(월)	근로계약서 등 작성 및 근무 개시

※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·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(변경된 일정은 기장군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)

#### 5.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

- 원서접수 기간 : 24. 4. 2.(화) 09:00 ~ 24. 4. 4.(목) 18:00
- 원서접수 방법 :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
  - ※ 접수기간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(등기우편 포함)에 한하여 유효함.
- 접수처 : ☎46073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36번길 11-6 기장군선관위 2층 지도계

○ 응시자 제출서류

제출시기	제출서류	
원서접수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응시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(별지서식)</li> <li>※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</li> </ul>	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~ 면접전형 당일	<b>제출대상</b>	<b>제출서류</b>
	합격자 전원	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중 택1) 사본 1부
	우대사항대상자	우대사항 관련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, 운전면허증 사본
	가점 대상자	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-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1부 -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-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- 다문화가족 :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· 가족관계증명서 ·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· 부모 또는 배우자(귀화 허가를 받은 자) 명의의 기본 증명서(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) ·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(결혼 이민자)
최종합격자 발표 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(채용예정자)</li> <li>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</li> <li>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 1부</li> <li>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</li> <li>※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</li> </ul>	

※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
 ※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(자격·우대사항 증빙서류 등)는 심사위원회에 일절 제공되지 않음.

6. 근무조건 등

채용분야	계약기간	근무시간 보수	수행업무
행정사무보조직 (선거비용 실사보조)	2024. 4. 22. ~ 6. 14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근무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일 8시간</li> <li>- 주5일 근무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※ 상황에 따라 시간외휴일근무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</li> <li>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당: 일당 84,620원</li> <li>- 초과근무수당 시간당15,870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선거비용 보전 안내 및 자료 수집</li> <li>회계보고서 및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 사전검토·선거비용 보전 실사 보조</li> <li>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자료 취합정리</li> <li>정치자금 회계보고 등 행정업무 보조 등</li> </ul>

※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름.

## 7. 유의사항

### □ 채용서류 반환 관련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2024. 5. 3.(금) ~ 5. 17.(금) 기간에 【별지4】 ‘채용서류 반환청구서’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.
  - ※ 반환청구 방법 : 불합격한 지원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또는 방문 청구
  - ※ 다만,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.
- 반환청구서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발송(특수취급우편물) 또는 위원회 직접 방문시 제공 (※ 우편발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)
- 반환청구기간 내에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파기
  - ※ 단,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응시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

### □ 채용비리 관련

-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에 따라 심의를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
-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(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)를 제출
-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 제33조(채용비리 피해자 구제)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

### □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, 부모직업, 가족관계,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(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)
- 응시원서 기재 누락, 연락 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,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(전형 응시 불가)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, 응시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.

-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,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.
-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(휴대전화, 이메일 등)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으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.
-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 [’24. 4. 4.(목) 18시]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
- 면접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\* 지참
  - ※ 기간만료 전 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(사진포함, 유효기간 내) 등
-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
-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기장군선관위 지도계(051-724-1390)로 문의

- 별지
1. 응시원서 양식 1부.
  2. 자기소개서 양식 1부.
  3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 1부.
  4.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1부(해당시).